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교육활동 중
고의, 중과실 외 면책 근거 마련 등〉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29호)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00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학교안전사고 책임 면제	4
2. 학교 밖 교육활동시 안전요원 배치근거 마련 등	14

I. 제안경위

【백승아의원안】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9.
3. 회부연월일 : 2024. 7. 30.

【강경숙의원안】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0.
3. 회부연월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승아의원안】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관하여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인솔자인 교사의 책임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제10조의4 신설).

【강경숙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안전사고 책임 면제(백승아의원 및 강경숙의원안 제10조제5항)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임 (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백승아의원안	강경숙의원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 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8조의2에 따른 교육 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이행하였으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학교장, 인솔교사 및 제10조의4에 따른 교육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 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4항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6년부터 '19년까지 소폭 발생 건수가 증가하다가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23년에는 전년도 14만 9천건 대비 4만 2천건이 증가한 19만 3천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단위: 천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	116	117	123	139	42	93	149	193

* 자료: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1)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사고 및 보상통계)

구체적인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19만 3,177건 중 체육활동 중 사고가 69,421건(3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쉬는시간, 수업시간 순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7만여건이고 고등학교가 3만 9천건 수준이었음.

<학교안전사고 현황(2023년도)>

체육활동	쉬는시간	식사시간	수업시간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하교	기타**	계
69,421 (35.9%)	32,330 (16.7%)	28,265 (14.6%)	21,423 (11.1%)	12,550 (6.5%)	10,223 (5.3%)	8,749 (4.5%)	10,216 (5.3%)	193,177 (100.0%)

* 수업시간 : 체육활동(체육수업) 제외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합계
건수	9,861	71,608	71,223	39,133	726	626	193,177

* 자료: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1)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사고 및 보상통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여¹⁾ 안전사고 발생시 요양·장해·간병·유족급여 등 공제급여²⁾를 피공제자³⁾ 또는 보호자등에게 지급함.

공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공제자 등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함⁴⁾.

한편, 공제급여 지급후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공제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음⁵⁾.

이와같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2)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례비

3)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제14조)

4)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 및 인솔교사등이 안전조치에 따르는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교원등의 교육활동 특히 현장체험학습 등에서의 위험부담을 제한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백승아의원안	강경숙의원안
면책주체	학교장, 인솔교사, 안전요원(개정안 신설)	학교장, 인솔교사
면책범위	민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면책적용 기준	제8조의2(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제10조4항(안전조치)	제10조4항(안전조치)
면책제한	고의, 중과실 (경과실 면책)	고의, 중과실 (경과실 면책)

구체적으로 개정안별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면책주체와 관련하여 학교장과 인솔교사를 공통적으로 주체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학교장 및 인솔교사인 점을 고려한 것임⁶⁾. 한편, 백승아의원안은 안 제10조의4에서 교육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학교밖 교육활동시 배치하도록 하면서 안전요원도 면책주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안전요원의 범위 및 규정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학교안전법 제10조제4항

둘째, 면책범위는 강경숙의원안은 형사책임에 한정하고 있는데(백승아의원안은 민형사상 책임), 이는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⁷⁾.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형사책임으로 면책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⁸⁾.

셋째, 면책적용 기준으로 제10조제4항⁹⁾에 따라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백승아의원안은 학교장에 대해서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포함¹⁰⁾), 면책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사 입법례에서도 관계 법령 및 학칙(학교폭력법), 명백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필요최소시(경찰관직무집행법) 등으로 기준을 적시하고 있음.

7) 특히, 민사상 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 면책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8) 정책적으로는 책임면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것보다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방안을 절충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9)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넷째, 면책제한 기준으로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점은 양 개정안이 동일함. 이는 현행법상 학교안전공제급여의 경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공제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로 면책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판단됨¹¹⁾.

다만, 교육활동 중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법령등에 따라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도 민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¹²⁾,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법령에 의한 행위 등 정당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체계¹³⁾ 및 형사법체계¹⁴⁾와 다른 예외를 학교장 및 교원을 주체로 학교 안전사고에만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일정한 업무수행시 면책을 규정한 입법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11)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2)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상으로도 고의(과실범의 경우 과실)가 없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정당행위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1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교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범죄위험이 명백긴급한 상황에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형사처벌을 임의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¹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참고로, 학교폭력예방법(2023년 개정, 2024년 3월 1일 시행) 입법례를 살펴보면 당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은 법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음¹⁶⁾¹⁷⁾.

15)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적용 요건이 매우 제한적(적용범위 제한, 명백긴급성, 불가피성, 최소침해성, 고의·중과실 제외)이면서, 필요적 면책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16)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무부는 개정안이 사실상 「형법」 제20조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학교폭력

따라서, 동 개정안은 교원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취지와 함께, 학생등 안전사고 피해자의 보호, 다른 직군 및 직무와의 형평성 및 현행 민형사법상 법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할 것임.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면책조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경우에 한해서 교원뿐 아니라 교육활동참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처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의 장과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하는 실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였음.

민·형사상 정당행위 심사는 위법성 심사로서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개정안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체계를 취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을 별도의 면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경과실로 인한 행위만 정당행위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기존 정당행위의 위법성 심사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보다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법체계적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상임위 의결안(대안)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안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① ~ ② (생략)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 일 것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17) 구체적인 예시로는 학생이 급박한 교통사고 위험에 처한 경우, 교사가 학생을 구조하기 위해 고의로 밀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와중에 학생이 넘어져서 다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음.

법무부는 특정직역에 대해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법체계(정당행위 심사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정당성 등 다른 요건없이 면책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원 직종에만 면책하는 것은 타 직종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으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면제 조항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속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학부모단체¹⁸⁾는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고의 등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소송제기가 증가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담당자의 책임방기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동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195호)」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표 1] 병합심사 필요 법률안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01801호)	정성국의원	2024.6.7./ 2024.6.8.	학교장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관련 책임제한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01830호)	백승아의원	2024.7.29/ 2024.7.30	학교장 및 인솔교사등의 학교안전사고 관련 책임제한 학교밖 교육활동시 안전요원 배치 등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01832호)	강경숙의원	2024.7.30./ 2024.7.31.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학교안전사고 관련 책임제한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표 2] 병합심사 법안별 주요내용 비교

	정성국의원안	백승아의원안	강경숙의원안
면책주체	학교장, 교원	학교장, 인솔교사, 안전요원(개정안 신설)	학교장, 인솔교사
면책범위	민형사상 책임	민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면책적용 기준	-	제8조의2(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제10조4항(안전조치)	제10조4항(안전조치)
면책제한	고의, 중과실 (경과실 면책)	고의, 중과실 (경과실 면책)	고의, 중과실 (경과실 면책)

2. 학교 밖 교육활동시 안전요원 배치근거 마련 등(백승아의원안 제10조의4 신설)

개정안은 학교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백승아의원안
<신 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배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답사(이하 “사전답사”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사전답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업무·배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사전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밖 교육활동에 있어서 인솔교사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 및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학교 밖 교육 활동시 사전답사를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교육청)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고 학교장 및 인솔 교사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법체계상 안전요원을 별도로 신설시 현행법상 교육활동참여자¹⁹⁾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생의 등·하교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교육활동참여자로서 임의적 예산지원²⁰⁾) 과도 비교가 필요함.

또한, 학교 안팎에서의 수업·특별활동·현장체험활동 등을 포괄하는 교육활동²¹⁾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²²⁾.

19) 제2조(정의)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외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20) 이른바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현행법 제 2조제5호나목에서 교육활동참여자로 규정하고 제10조의2에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임의적 지원)고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1)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교육부는 현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역할, 용어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사전답사는 교육목적 부합여부 점검도 중요하므로 필요시 안전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재정적 지원의무는 교육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안전요원의 법적인 지위와 자격 및 역할 등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²³⁾.

시도 교육청(서울·부산·대구·경기·충북)은 안전요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사전답사는 안전뿐 아니라 교육활동 점검의 역할도 포함되므로 외부기관 위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5

22) 한편 사전답사의 경우 교육활동 전반과 관련하여 사전적인 준비를 위한 것으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별도의 사전답사가 가능한지도 의문임.

23) 이에 안전요원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하는 안 제10조제5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